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규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660

발의연월일: 2021. 3. 9.

발 의 자:이규민・이성만・김민기

박상혁 · 정청래 · 홍정민

김두관 • 이원택 • 윤영덕

윤미향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등에 대하여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고, 이 중 1급이상의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등에 대하여 재산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등록의무자이나 공개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일부의 공직자들이 부동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큰 이익을 취하는 한편, 토지·주택관련 공기업의 임직원들이 본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대량의 토지를 매매하여 이를 통해 이익을 편취하는 사례들이 다수 발생되고 있어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주택 도시보증공사의 직원은 등록기관에 부동산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도록 하고.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등록의무자 또한 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단서·같은 조 제 2항제12호의2부터 제12호의4까지 및 제10조제2항 신설 등).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12호의2부터 제12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2호의2부터 제12호의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의 무자의 경우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에 한정하여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12의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직원

12의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 된 지방공사의 직원

12의4.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직원 제4조제5항 단서 중 "소유자별로"를 ",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공개대상자는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자별로"로 한다.

제6조의5제1항 전단 중 "제10조제2항"을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제8조제10항 본문 중 "제10조제1항에"를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로, "재산공개대상 공직자"를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 및 같은 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공개대상자"로 한다.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제1항과 제2항에"를 "제1항·제2항 및 제3항에"로 하고, 같은 조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에"를 "제4항에"로 한다.

②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등록의무자 중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 자가 아닌 공직자(제3조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외한다)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제6조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 중 부동산에 관한 내용을 등록기간 또는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의5제13항 전단 중 "제10조제4항을"을 "제10조제5항을"로 한다. 제22조제2호 중 "제10조제2항"을 "제10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10조제3항"을 "제10조제4항"으로 한다.

제27조 중 "제10조제3항"을 "제10조제4항"으로 한다.

제30조제3항제1호 중 "제10조제2항"을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동산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산등록이나 변동사항 신고등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등록의무자) ① 다음 각 호	제3조(등록의무자) ①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	
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	
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u><단서 신설></u>	<u>다만, 제12호의2부터 제12호의4</u>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의무자의 경우 제4조제2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소
	유권·지상권 및 전세권에 한정
	하여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u><신 설></u>	12의2.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u>직원</u>
<u> <신 설></u>	<u>12의3. 「지방공기업법」 제49</u>
	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
	로 설립된 지방공사의 직원
<u> <신 설></u>	<u>12의4. 「주택도시기금법」 제1</u>
	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의 직원
13. (생략)	13. (현행과 같음)
제4조(등록대상재산) ① ~ ④	제4조(등록대상재산) ① ∼ ④

(생략)

⑤ 제2항에 따른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별로 재산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을 기재하거나 소명자료를 첨부할 수있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부동산, 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별로 재산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⑦ (생 략)

제6조의5(금융거래정보·부동산정보의 제공 및 활용 등) ① 공 직자윤리위원회는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제2항,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이하 이 조에서 "재 산등록·신고"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 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현행과 같음)	
⑤	
,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공개대상자	
는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자별로	
⑥·⑦ (현행과 같음)	
ll6조의5(금융거래정보·부동산정	
세6조의5(금융거래정보·부동산정 보의 제공 및 활용 등) ①	
보의 제공 및 활용 등) ①	
보의 제공 및 활용 등) ①	
보의 제공 및 활용 등) ①	
보의 제공 및 활용 등) ①	
보의 제공 및 활용 등) ①	
보의 제공 및 활용 등) ①	
보의 제공 및 활용 등) ①	

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 등록의무자가 요청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 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제2 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 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 다)을 이용하여 금융기관(「금 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 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15조 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의 장에게 금융거래 중 잔 액에 관한 자료(신용정보 중 대출 잔액에 관한 자료를 포함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 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2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장은 「금융실명거 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신용정보의 이 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

5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이 동의할 때에는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수 있다.

② ~ ⑥ (생 략)

- 제8조(등록사항의 심사) ① ~ ⑨ ㅈ (생 략)
 -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5조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 또는 제6조에 따른 변동신고사항을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개한 후 3개월 이내에 재산공개대상 공 직자 전원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로써 심사기간을 3개월 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① ~ ⓑ (생 략)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① (생 져 략)
<<u>신 설></u>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8조(등록사항의 심사) ① ~ ⑨
(현행과 같음)
①
<u></u> স্ম
10조제1항 및 제2항에
제10조제
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공개대
상자
① ~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① (현
행과 같음)
②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등록의무자 중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가 아닌 공직자(제3

② (생략)

- ③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누구든지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등록의무자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을 열람·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등록의무자가 본인의 등록사항에 대하여 열람·복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3항에 따른 허가를

조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공
직자는 제외한다) 본인과 배우
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
속의 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제6조에 따른 변동
사항 신고 중 부동산에 관한
내용을 등록기간 또는 신고기
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
여야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u>④</u> 제1항·제2항 및 제3항에

-----<u>제4항에</u>-----

할 수 없다.

1. ~ 4. (생략)

제14조의5(주식백지신탁 심사위 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① ~ ② (생 략)

① 제12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는 제10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 "제3항에 따른 허가"는 "제12항에 따른 허가"로, "등록의무자"는 "공개대상자등"으로 본다.

① (생략)

제22조(징계 등) 공직자윤리위원 회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 체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사 유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 구할 수 있다.

- 1. (생략)
- 2.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제2 항, 제6조의3, 제7조, <u>제10조</u> <u>제2항</u>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 변동사항 신 고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
1. ~ 4. (현행과 같음)
제14조의5(주식백지신탁 심사위
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① ~ ⑫ (현행과 같음)
③
<u>제10</u> 조제5항을
,
(hg (현행과 같음)
제22조(징계 등)
<u>.</u>
1. (현행과 같음)
2
제10조
 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마치지 아니한 경우

- 3. ~ 5. (생략)
- 6. <u>제10조제3항</u>(제11조제2항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등록사항을 열람·복사하거나이를 하게 한 경우

7. ~ 21. (생 략)

제27조(무허가 열람·복사의 죄)
제10조제3항(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재산등록
사항을 열람·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제30조(과태료) ①・② (생 략)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제2
 항, 제6조의3, 제7조, <u>제10조</u>
 <u>제2항</u>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 변동사항 신

3. ~ 5. (현행과 같음)						
5. 월 5. (원왕과 설립) 6. 제10조제4항						
7. ~ 21. (현행과 같음)						
제27조(무허가 열람·복사의 죄)						
제10조제4항						
제30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1						
제10조						
<u>- 제</u> 3항						

	고	등을	정당	한	이유	없이
	대통	통령령,	으로	정	하는	기간
	내여	· 마치	기이	ᅡ니	한 사회	람
2.	~	11. (행 릭	=)		
	٠. (5	(31)	コと)			

-						
-						
2.	\sim	11.	(현행	과 같	음)	

④·⑤ (현행과 같음)